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 제공 의무
규정 신설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8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 제공 의무 규정 신설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31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7조).

Ⅲ. 검토의견

1.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 제공 의무 규정 신설 등(안 제116조, 안제12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해자가 보험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시,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16조),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증명 또는 자료 등의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생략)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u>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u>	② ----- ----- ----- <u>증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u>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거가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7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당 증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

③ -----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
-----.

④ -----

-----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증명,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④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 니한 사업주 5. 제1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자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근로자가 업무 도중 재해를 겪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현행법’이라 함)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현행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는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¹⁾

그러나 재해 발생 당시의 근무 환경 등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업주의 도움 없이 해당 자료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있음.

이와 같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이를 돕도록 하고 있고(현행법 제116조), ②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험급여에 관한 심리·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방해·기피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현행법 제117조 및 제129조).²⁾

그러나 현행법 제116조는 사업주가 협조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공단의 조사에 대한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³⁾하는 것과 달리 재해근로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행사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이에 개정안은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수급권 행사의 강화 및 해당 의무의 실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행 강제 수단으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은 공단의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의 정도가 공단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 강제 수단으로서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 다른 수단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일부 노동관계법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자료요구’ 관련 입법례

법령 및 조항	내 용	위반시 처벌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500만원이하

법령 및 조항	내 용	위반시 처벌
제39조(사용증명서)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과태료
「남녀고용 평등법」 제 18조(출산전후 휴가에대한지원)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42조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공단의 현장조사 또는 자료요청에 불응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